

시 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6744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일자	2021. 5. 10.	윤여민	안순봉	임인구	박종수	05/10 한제현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협 조	주차계획과장		代최광운	

I·SEOUL·U

##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21. 5.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정책의제형 성	<p>◆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p> <p>-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p>◆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p> <p>-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시 안전관리자문 단 점검 참여
정책수립	<p>◆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p> <p>-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p>◆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p> <p>-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책집행	<p>◆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p> <p>-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과급효과 분석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치구 협조
	<p>◆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p> <p>-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책홍보	<p>◆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p> <p>-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사항	<p>◆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p>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p>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계식 주차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차량의 추락사고, 이용자의 발빠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그 관리 실태를 점검, 유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I 관련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에 긴급안전점검 실시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어야 함
    - ※ 20대수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II 기계식 주차장 현황

- 서울지역 설치 현황 : \*\*\*\*\*

(‘21.4.13.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식 주차장 종류별 현황 <별지> 참조

- 자치구별 설치현황

(단위: 개소,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기계식 주차장 종류별 현황〉

구 분	형 태	내 용
2단식		주차구획이 2단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승강기식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수직순환식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수평순환식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평면왕복식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 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다단식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다층순환식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승강기 슬라이드식		승강기식 주차장의 승강기가 상하 및 수평으로 자동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특수형식	-	위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 III

## 사고발생 현황

□ 기계식주차장 관련 최근 5년간 사고 현황(교통안전공단 자료, '21.3.31. 기준)

구 분	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발생건수 (서울지역)	76 (33)	2 (2)	17 (9)	18 (9)	10 (4)	20 (5)	9 (4)

□ 최근 기계식 주차장 사고 발생 사례

구 분	서울시 용산구 사고	서울 강남구 사고
발생일시	· 2020. 12.	· 2020. 1.
인명피해	· 부상자 1명	· 부상자 1명
사고경위	· 발을 헛디터 주차장치 측면의 개구부에 신체 일부가 빠짐(관리인 미배치)	· 자동차를 입고하는 과정에 부주의로 인하여, 리프트가 내려가 있던 승강로로 자동차 추락
사고현장		
구 분	경기도 사고	부산시 사고
발생일시	· 2020. 10.	· 2019. 4.
인명피해	· 부상자 1명	· 차량 2대 파손(부상자 없음)
사고경위	· 출입구 진입 중 차량을 정차시키지 못하고, 닫혀져 있던 출입문 충돌 후 차량 추락	· 기계식주차장 작동 중에 트렁크가 열린 채로 차량이 입고되어 트렁크가 운반기에 걸려 추락
사고현장		

# IV 안전관리

## □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사항

### ○ 안전도 심사 및 인증(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설계도면상의 성능과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함
-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함

#### ※ 기계식주차장 제작·설치 업무처리과정

제작자 등 → ①안전도심사 신청(교통안전공단) → ②심사서 교부 → ③안전도 인증 신청(구청) ④인증서 발급 → ⑤주차장 제작·설치

### ○ 사용검사(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 3년)

####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업무처리과정

관리인(제작자) 등 → ①사용검사 신청(교통안전공단) → ②검사확인증 교부 및 경과 통보 → ③안전도 인증 신청(구청) ④인증서 발급 → ⑤주차장 제작·설치

### ○ 정기검사(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검사유효기간 2년)

### ○ 정밀안전검사(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

- ▶ 노후되거나(설치 10년이 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 주기)

#### ※ 서울시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기계식주차장 현황('21.4.13.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안전점검 실시 계획

### 중점 점검사항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정밀안전검사 미검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검사 독려
- 관리자·이용자의 안전의식 교육 및 안전관리 상태 지도·점검
- 시설물 관리업체 담당자 점검과정 입회, 전문가 안전지도 등 컨설팅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5. 10. ~ 5. 28.(3주간)
- 점검대상 : 40개소 표본

〈자치구별 점검대상〉

(단위: 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1 〈기계식주차장 점검대상〉 참조

### ○ 선정기준

- '10년 이상된 시설물 중 20대 이상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 정밀안전검사(검사주기 4년)를 받지 않은 운영 시설물
- ※ 기타 사고발생 및 민원, 문제야기 등 대상 시설물

### ○ 점검방법 : 기계식주차장 현장 확인점검(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붙임2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붙임3 〈안전점검표〉 참조

### 점검반 구성

#### ○ 민간전문가 및 자치구 합동 점검 : 1개조 4명(전문가 1, 시 2, 자치구 공무원 1)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
  - 민간전문가(3명) : 서울시안전관리자문위원(전문기술인)중 '기계분야' 전문가  
\*\*\*\*\*
  - 공무원(5명) : \*\*\*\*\*

- 점검현장(40개소) 등을 감안, 합동점검반 2개조(조별 4~5명)으로 구성·운영

## □ 주요 점검사항

### 서 류 · 안전관리 분 야

#### ○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여부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검사 이행여부 확인(검사유효기간 2년)
  - 노후 되거나(설치 10년이 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4년 주기)에 대한 검사 이행여부 확인
-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23제1항 관련

#### ○ 무단방치 및 철거행위 시설물

- 노후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한, 임의 운영(작동) 중지 및 철거행위 여부
- ※ 주차장법 제19조의13 관련

#### ○ 시설물 관리인 배치 및 의무교육 이행여부 등

- 관리인의 배치여부(교육이수) 확인, 유지·보수 업체 안전관리 상태 등
- ※ 주차장법 제19조의14, 20제1,3항 관련

### 설 비 · 구 조 분 야

#### ○ 안전장치·구조물 등 안전관리 상태

- 주차설비 및 주차장치의 정상 작동상태,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 관리 등 부대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
-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13조 관련
- 사람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 방지
- ※ 기계식주차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1.12.)

#### ○ 기타 최신법령 개정사항 적용 및 안전기준 강화사항 준수 여부 등

- ('20.9.22. 개정·고시)사항 적용 이행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확인
- ▶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21.3.23. 시행)



## 기타 · 제도개선 분야

- 현 시설물의 대한 지속운영 필요성 및 의견수렴 등
  - 주차운영 방식(지하화 등) 변화에 따른 기존 기계식주차장의 지속운영·환경정비 여부 및 현장 의견·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
- 점검결과 조치(활용) 및 사후관리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후 즉시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및 행정조치 등 요청
    - 담당부서(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및 자치구 통보하여 지적사항 조치
    - 현장점검 이외 참여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도출
    - 기계식주차장 운영 관련 안전관리 개선안 건의(▶ 국토교통부)
  - 후속조치 결과 지속적인 관리
    -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차후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실시

## VI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700,000원
    - 산출기초 : 290,000원 × 10일 × 3명 = 8,700,000원
    - ※ 2021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일 290,000원 적용
  - 지급방법 : 세액 원천징수 후 무통장 계좌로 일괄입금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 붙임 : 1.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대상 1부.  
2.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지적사항 점검표 1부.  
4. 기계식주차장 관련 규정 등 1부. 끝.

**붙임 1**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대상**

총 40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점검대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일 : ex) 2021. 05. 15.
- 주 소(사업장) : ex)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78(성수동) 매연빌딩(요양병원)
- 기계식주차장치 현황 : ex) 다층순환식 100대, 2단식 20대
- 유지·보수 업체(전화번호) : ex) (주)그랜드 산업, 02)-465-1136

구 분	체크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조정	불량	
용도	<input type="checkbox"/>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법29조)
안전검사	<input type="checkbox"/> 안전검사(사용·정기) 수검 여부				100만원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에 제공하는지 여부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법29조)
	<input type="checkbox"/> 불합격한 기계를 사용에 제공하는지 여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법29조)
	<input type="checkbox"/>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에 제공하는지 여부				
검사확인증 부착 등	<input type="checkbox"/> 기계식주차장검사 확인증 부착 여부(출입구 근처)				50만원 과태료(영 별표 6)
관리인 배치	<input type="checkbox"/>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1명 이상)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법29조)
	<input type="checkbox"/>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미이수				100만원 과태료

구 분	체크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조정	불량	
안내문 부착	<input type="checkbox"/> 안내문의 위치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 부착				50만원 과태료
	<input type="checkbox"/> 안내문의 내용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조작금지)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기능유지	<input type="checkbox"/>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법29조)
	<input type="checkbox"/> 자동운전 확인(수동운전 불인정)				
	<input type="checkbox"/> 각종 센서(경보음) 및 지시등 점등상태				
기계장치	<input type="checkbox"/> 기계장치(안전가동확인장치) 작동 및 볼트·너트 상태				
	<input type="checkbox"/> 작동 시 이상 소음 및 진동과 누유 등의 상태				
	<input type="checkbox"/> 와이어로프의 소선 단락 및 부식, 장력, 파손 상태				
	<input type="checkbox"/> 출입구 내부 발빠짐 틈새(10cm이하) 적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기계식 점검용 사다리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하 주차장의 경우 배수시설의 적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철골의 균열·파손·부식 여부				
	<input type="checkbox"/> 승강로 및 주행로의 가이드 레일 및 롤러의 마모, 변형, 손상, 윤활의 적정성 여부				
제어반	<input type="checkbox"/> 개폐기의 단자 체결상태				
	<input type="checkbox"/> 계전기의 접점 표면의 산화, 마모 및 소음 상태				
	<input type="checkbox"/> 내부 배선 및 단자대의 오염, 손상 및 나사의 체결 상태				

구 분	체크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조정	불량	
안전장치	<input type="checkbox"/> 출입문(작동 중 접근시 정지장치) 작동상태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진입금지 신호등 또는 기동벨 작동상태				2단식 다단식 제외
	<input type="checkbox"/> 출입문이 열린 경우 작동금지				
	<input type="checkbox"/>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상태				
	<input type="checkbox"/> 작동스위치 설치 위치 및 파손 유무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				
	<input type="checkbox"/> 울타리 및 안전난간 등의 경계시설의 적정성				
기타 (권장사항)	<input type="checkbox"/> 입고 가능차량 제원 표시				
	<input type="checkbox"/> 차량 승입면의 조명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주차장 내(內) 비품 제거 및 안전통로 확보				
	<input type="checkbox"/> 안전스티커 부착				
	<input type="checkbox"/> 주차설비 사용매뉴얼, 도면 등 보유				
	<input type="checkbox"/> 주차관리원의 야광조끼, 안전화 착용, 경광봉 휴대				
종합 의견					

**붙임 3**

##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지적사항 점검표

<b>점 검 명</b>		기계식주차장 외부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장소 개요	장소명	□ 명 칭 :	
		□ 위 치 :	
현장	관리인	□ 성 명 :	
		□ 연 락 처 :	
관계자	유지·보수 업체	□ 상 호 :	
		□ 연 락 처 :	
지 적 내 용	분야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요망사항
	서류· 안전관리 분야		



	<p style="text-align: center;"><b>설비·구조 분야</b></p>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관리기관 (관리인)	소속 :	성명 :            (서명)
확인자	관리기관 (자치구)	소속 :	성명 :            (서명)

점검자	(건축/건설) 기계분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성명 : (서명)
점검자			성명 : (서명)
점검자			성명 : (서명)
점검자			성명 : (서명)

**붙임4 [참고] 기계식주차장 관련 규정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9. 제19조의12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1.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5.8.11., 2016.1.19., 2017.3.21., 2017.10.24., 2020.6.9., 2021.1.12.>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1.1.12.>

1.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에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2호	20만원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10만원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6호	50만원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만원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만원
자.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	50만원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7호	50만원